#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2015.11.19.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을 등록하는 경우에 미취사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도시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시 미취사 객실 설치허용기준 신설(안 제11조):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 설치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관광진흥법」 제3조 및 제4조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 및 별표 1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.

다. 입법예고: 의견없음(2016. 9. 21 ~ 10. 12)

라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
마. 성별영향평가분석: 해당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1월 19일 상위법령인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되어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휴양콘도 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